#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15 발의연월일: 2023. 7. 27.

발 의 자:서동용・민형배・정성호

이병훈 • 김정호 • 김철민

송재호·최인호·김홍걸

윤재갑 • 김용민 • 유기홍

문정복 · 김태년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일부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아동학대보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교원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과정에서 교육활동이나 유치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2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7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초·중등교육법」의 준용)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의와 해당 교원의 조사,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권익 보호와지원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 및 제60조의13을 준용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의견 제 출을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8조의3(「초・중등교육법」의
	준용)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
	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
	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
	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의와 해당 교원
	의 조사, 수사 또는 재판 과정
	에서 정당한 권익 보호와 지원
	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
	법」 제60조의12 및 제60조의1
	3을 준용한다.